

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2024년도 주요 변경사항

○ 제1차 및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분리 및 수수료 변경

기존	변경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(원서접수기간) 1·2차 동시 원서 접수(원서접수 기간 동일)(응시수수료) 1·2차 통합 3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·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분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차: '24. 3. 25(월) ~ 3. 29.(금)- 2차: '24. 7. 8.(월) ~ 7. 12.(금)(응시수수료) 차수별 분리 징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차: 30,000원, 2차: 30,000원

○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일 변경

기존	변경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응시원서접수 마감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제1차 시험 전과목 면제자: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제1차 시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: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

○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

기존	변경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

- 개정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,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하며,
-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

1. 최소합격인원

-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임

2.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

구 분	원서접수	시험 시행지역	시험일자	합격자발표
제1차 시험	'24. 3. 25.(월) 09:00 ~ 3. 29.(금) 18:00	서울, 부산 대구, 광주 대전, 인천	'24. 5. 4.(토)	'24. 6. 19.(수)
제2차 시험	'24. 7. 8.(월) 09:00 ~ 7. 12.(금) 18:00		'24. 8. 10.(토)	'24. 11. 13.(수)

※ 2024년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되었으며, 전년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

※ 면제(경력)서류 제출기간 : '24. 7. 1.(월) 09:00 ~ 7. 12.(금) 17:00(토·일 제외)

※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[단, 원서접수 마감일은 18:00까지 접수 가능]하며,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
※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, 계좌이체만 가능

3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가. 시험과목(「세무사법시행령」 제1조의 4)

구 분	시 험 과 목	시험방법
제1차 시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 (「국세기본법」, 「국세징수법」, 「조세범처벌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,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) ③ 회계학개론 ④ 「상법」(회사편) · 「민법」(총칙) · 「행정소송법」(「민사소송법」 준용규정 포함) 중 택1 ⑤ 영어(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) 	객관식 5지택일형
제2차 시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회계학1부(재무회계, 원가관리회계) ② 회계학2부(세무회계) ③ 세법학1부 (「국세기본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) ④ 세법학2부 (「부가가치세법」, 「개별소비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법」 · 「지방세기본법」 ·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중 취득세 ·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) 	주관식

나. 과목별 시험시간

시험구분	교시	시 험 과 목	입실완료	시 험 시 간	문항수
제1차 시험	1교시	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	09:00	09:30 ~ 10:50(80분)	과목별 40문항
	2교시	③ 회계학개론 ④ 상법·민법· 행정소송법 중 택1	11:10	11:20 ~ 12:40(80분)	과목별 40문항
제2차 시험	1교시	① 회계학1부	09:00	09:30 ~ 11:00(90분)	4문항
	2교시	② 회계학2부	11:20	11:30 ~ 13:00(90분)	4문항
	3교시	③ 세법학1부	13:40	14:00 ~ 15:30(90분)	4문항
	4교시	④ 세법학2부	15:50	16:00 ~ 17:30(90분)	4문항

-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·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“해당 시험일” 현재 시행 중인 법률·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
-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만 적용하여 출제
- 기활용된 문제, 기출문제 등도 변형·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

4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가. 응시자격(「세무사법」 제5조 제2항)

- 최종합격 발표일(2024. 11.13.)을 기준으로 「세무사법」 제4조 제2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-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
- ※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에서 제외

나. 결격사유(「세무사법」 제4조)

- 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음

1) 미성년자

- 2)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- 3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4)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) 「세무사법」, 「공인회계사법」 또는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(「세무사법」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) 「세무사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7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9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10) 「세무사법」과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조세범처벌 절차법」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합격자 결정

- 제1차 시험(「세무사법시행령」 제8조제1항)
 -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
○ 제2차 시험(「세무사법시행령」 제8조 제2항)

-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
1.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가.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

나.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「세무사법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. 이 경우 동점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)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
2. 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「세무사법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: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

나.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「세무사법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: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.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

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중 최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	×	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별표 2에 따른 회계학 1부·2부 과목의 평균점수	÷	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
---	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6. 시험의 일부면제

가. 시험의 일부 면제(「세무사법」 제5조의 2)

1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면제

○ 2023년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

-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
 -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
-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
 - 원서접수 시 “재응시자”로 선택하여 접수
 -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(결시 포함)하여도 이번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후 응시 가능하며, 이번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
 -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,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
(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,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)

- 국세(관세 제외)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-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
-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(세법학 1부, 세법학 2부)를 면제

- 국세(관세 제외)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국세(관세 제외)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
 - ※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(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 제3항)
 - 2006. 3. 24.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
 - 2018. 1. 1.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사무종사 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(지방세, 군재정)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·고용직·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 기간은 제외함

※ 경력산정기준일 :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(「세무사법」 시행령 제1조의 6)

<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>

- 제출기간 : 2024. 7. 1.(월) 09:00 ~ 2024. 7. 12.(금) 17:00까지(토·일 제외)
 - ※ 경력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, 경력서류는 마감일 17:00까지 제출
- 제출서류 : ①경력증명서(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), 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(발급자 원본대조확인), ③시험 일부면제신청서(공단소정양식),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(공단소정양식)
 - 경력증명서 :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
 - 인사기록카드사본 : 발급담당자 기재 및 원본대조필하여 제출
- 제출서류서식
 - 경력증명서, 시험 일부면제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semu)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
 -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[2024. 7. 12.(금) 17:00 도착분]까지 인정
 - 우편접수 시 반드시 봉투 겉면에 「세무사 관련서류 재증」이라고 표기하여야 함
- ※ 최근 5년 내(2020년도 이후)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, 서류제출 면제
 - (2019년 이전(2019년도 포함)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)
-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(접수 취소조치)

7.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 제출기관

기관명	담당부서	주 소	우편번호	연 락 처
서울지역본부	전문자격시험부	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(휘경동 49-35)	02512	02-2137-0556
부산지역본부	필기시험부	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(금곡동 1877번지)	46519	051-330-1815
대구지역본부	필기시험부	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(갈산동 971-5)	42704	053-580-2382
광주지역본부	필기시험부	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(대촌동 958-18)	61008	062-970-1768
대전지역본부	필기시험부	대전 중구 서문로25번길 1 (문화동 165)	35000	042-580-9133
인천지사	필기시험부	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(고잔동 625-1)	21634	032-820-8684

8. 공인어학성적

가.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

○ 기준점수

시 험 명	TOEFL		TOEIC	TEPS	G-TELP	FLEX
	PBT	IBT				
일반응시자	530	71	700	340	65(level-2)	625
청각장애인	352	35	350	204	43(level-2)	375

※ 청각장애 응시자(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)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인정. 다만,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

○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전날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

- 단,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**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**

※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

○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·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

○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,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

※ 단,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(단,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)후 한국어로 번역·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

※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및 유선 연락

○ 제출방법

구분	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발표자		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미발표자
	사전등록자*	사전 미등록자	
TOEIC, G-TELP, TEPS	추가 제출 불필요	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(자동승인) *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	해당 어학시험 기준점수를 임의로 입력하여 접수하고 1차 시험일 전 까지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(자동승인)
TOEFL, FLEX, TOEIC(일본) 및 국외취득성적		해당 어학시험 기준점수를 임의로 입력하여 접수하고 소명 기간 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함	

* 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에 기재출(사전등록)하여 진위가 확인된 자

- 공인어학성적의 위·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, 「세무사법」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

<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>

-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4. 5. 3.(금)까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
-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,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'마이페이지-어학성적제출내역'에서 확인 가능

< 공인어학성적 온라인(다이렉트) 제출 서비스 실시 >

- TOEIC, G-TELP 및 TEPS시험의 경우,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조회 및 제출 가능
 - 큐넷 메뉴 : 세무사 홈페이지- 마이페이지-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
 -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

9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

- 제1차 시험: '24. 3. 25.(월) 09:00 ~ 3. 29.(금) 18:00 [5일간]
- 제2차 시험: '24. 7. 8.(월) 09:00 ~ 7. 12.(금) 18:00 [5일간]
- ※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[단, 원서접수 마감일은 18:00까지 접수 가능하며,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]
- ※ 2024년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분리되었으며, 전년도 합격자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
- ※ 면제(경력)서류 제출기간: '24. 7. 1.(월) 09:00 ~ 7. 12.(금) 17:00(토·일 제외)

나. 접수방법

- Q-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www.Q-Net.or.kr/site/semu>)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
- ※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(공단지부·지사)를 위해 원서접수도우미 지원
- ※ 단체접수는 불가
-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(3.5cm×4.5cm)을 파일(JPG·JPEG 파일, 사이즈: 150 X 200 이상, 300DPI 권장, 200KB 이하)로 등록 (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)
- 수험자는 접수완료(수수료 결제) 후,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

다. 수수료 납부

- 응시 수수료 : 제1차 시험 30,000원, 제2차 시험 : 30,000원
-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
 - ※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,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(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)
 - ※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

라. 수수료 환불(「세무사법시행령」 제6조)

-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
-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
-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
-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 - ※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

마. 수험표 교부

-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
-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
- 수험표에는 시험일시, 입실시간, 시험장 위치(교통편),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
 - ※ 「SMART Q-Finder」도입으로 시험전일 18: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

바. 원서접수 완료 후(결제완료 후) 접수내용 변경 방법

-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,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

10. 응시편의 제공

가.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

-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
 -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
 -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,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, 상지장애로 구분
 -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) 의사진단서 제출(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
-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(병원급 의료기관)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(소견서 포함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(임산부는 의원급·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,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
- 기타,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‘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’ 참고

〈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〉

1.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2.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(불편사항) 등
3.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4. 진단서 유효기간
 -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
 - 단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, 의사진단서에 따름

※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나.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

<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>					
장애 유형		편의 구분	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	작업형 실기시험	제출서류
시각 장애	중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7배 연장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 방법	- 음성지원컴퓨터 - 문제지대독 - 점자 문제지 - 확대 문제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- 문제지대독	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 - 확대 답안지 - 점자 답안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경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 방법	- 확대 문제지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해당 없음	
		답안작성 방법	- 확대 답안지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뇌병변 장애	장애 정도 구분 없음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 간격 조정)	해당 없음	
지체 장애	(1) 상지 중증 (장애정도가 심 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(2) 상지 경증 (장애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 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(3) 하지 (장애정도 구분 없음, 척추장애 * 포함)	시험시간	- 일반 수험자와 동일	- 시험시간 1.1배 연장 ※ 단,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 는 종목에 한정	①,②,③호 중 하나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 (좌석 간격 조정)	해당 없음	

	(4) 복합장애 [상지+하지]	시험시간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- (1) 또는 (2)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+ (3)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해당 없음	
청각 장애	장애 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보청기 사용 -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-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- 별도 시험실 배정		①,②,③호 중 하나
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①,②,③호 중 하나
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	일시적 신체장애	편의제공 사항 전반	-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		④호
	과민성대장증후군, 과민성방광증후군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
	임신부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④,⑤호 중 하나

※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
※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

※ 제출서류

-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(명서)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.
-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(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) 각 1부.
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.
-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.
-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(소견서 불인정, 유효기간 필요) 원본 1부.
-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(예시)

-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(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+ 하지장애③) 작업형 시험 적용 시
⇒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[표준시간(60분) + {(60분)*0.3}=78분]
+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[(60분*0.1)=6분] = 84분

11.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
가. 기간 : '24. 5. 4.(토) 14:00 ~ 5. 10.(금) 18:00 <7일간>

나. 방법 :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

※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

12. 제2차 시험 의견제시 접수

가. 일시 : '24. 8. 10.(토) 18:00 ~ 8. 16.(금) 18:00 <7일간>

나. 방법 :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

※ 제2차 시험은 가답안 및 최종정답을 공개하지 않음

13.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

가. 합격자 발표

○ 제1차 시험 : '24. 6. 19.(수) 09:00

○ 제2차 시험 : '23. 11. 13.(수) 09:00

○ 발표방법

-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(<http://www.Q-Net.or.kr/site/semu>) [60일간]

- 자동안내전화 : 1666-0100 [4일간]

나.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

○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semu) 신청 및 발급

다. 자격증 교부

○ 발급기관 : 국세청(소득세과)

○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

-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

14. 수험자 유의사항

【 제1·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·위조·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
※ Q-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

※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

2.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,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, 수험포,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
※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

※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

※ 신분증 인정 범위:

- (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) 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(유효기간 이내인 것) 및 정부24·PASS앱을 통한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), ②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,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,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, ④ 여권, ⑤ 공무원증(장교·부사관·군무원신분증 포함), ⑥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, ⑦ 국가유공자증, ⑧ 국가기술자격증*(정부24, 카카오,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) *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,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
- (초·중·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) ①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, ②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(사진(컬러)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되고,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)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,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, ⑤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- (미취학 아동)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“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”,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- (사병(군인))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

- (외국인) ① 외국인등록증,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, ③ 영주증

※ 신분증(증명서)에는 사진, 성명, 주민번호(생년월일),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(없는 경우 불인정)

※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, 녹화·촬영본,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

※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

3.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4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.
 - ※ '시험포기각서'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·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
 - ※ 단, 설사/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,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
5. 결시 또는 기권,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6.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7.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8.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의 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.
9.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개인용 시계(손목시계, 탁상시계 등)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※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
 - ※ 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
 - ※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10.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(SD카드 포함)를 제거, 삭제(리셋, 초기화)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.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- ※ 단,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
 - ※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(초기화 이후 세팅) 방법숙지

11. 시험시간 중에는 **통신기기 및 전자기기**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, 스마트워치 등을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, **금속(전파)탐지기**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**장비를 소지·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(퇴실) 및 무효(0점) 처리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**
 ※ 전자·통신기기(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)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
 ※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
12.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13.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,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14.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15. 기타 시험일정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세무사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.

【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답안카드에 기재된 **‘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’**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2.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(유의사항)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,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(A형 공통)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3.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.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 번호와 **동일한 번호에 마킹**하여야 합니다.
4. 답안카드 기재·마킹 시에는 반드시 **검은색 사인펜**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 ※ **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**

5.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(검은색 사인펜 미사용) 수험자의 부주의(답안카드 기재·마킹 착오, 불완전한 마킹·수정, 예비마킹 등)로 판독불능,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
※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,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(단, 답안 이외 수험 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)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

※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

【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'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'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2. 수험자 인적사항·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(그 외 연필류,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)

※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

※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

3.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,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.

4.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(=)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, 수정액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★ 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·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,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(<http://www.Q-Net.or.kr/site/semu>)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(☎1644-80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